

## 2024년도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연간 공모일정(안) 공고

「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5조의2 및 제9조, 「사회적기업 인증/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」(고용노동부)에 따라 2024년도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연간 공모일정(안)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. 2. 8 .

경 기 도 지 사

### □ 연간 공모일정(안)

사 업 명	차수	공 고	검토 및 현장실사	심사 및 지정(선정)
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	1차	3월	4월	5월
	2차	8월	9월	10월
② 일자리 창출* (일반인력)	1차	2월26일	3월	4월
	2차	5월	6월	7월
③ 사회보험료	-	2월26일	시군 수시접수 및 심사	

\* ② (예비)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(일반인력) 2차 공모는 1차 공모 결과 잔여예산 발생 시 추진

※ 상기 연간 공모일정(안)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

### □ 참여대상(기업)

○ 공모일 현재 경기도 내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아래 기업

사 업 명	참 여 대 상	비 고
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	•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법인·단체	
② 일자리 창출 (일반인력)	• 예비사회적기업, 인증사회적기업	
③ 사회보험료	• 인증사회적기업	시군 수시접수

※ 사업별 지원요건 등 각 사업 공모 시 '사업별 공고문' 확인 요망

## □ 사업별 개요

### «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»

지정요건	세 부 내 용
① 조직형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「민법」에 따른 법인·조합</li> <li>• 「상법」에 따른 회사·합자조합</li> <li>•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공익법인, 비영리민간단체, 사회복지법인, 소비자생활협동조합, (사회적)협동조합, 그 밖에 다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</li> </ul> </li> </ul>
② 사회적 목적 실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사회서비스제공형, 일자리제공형, 지역사회공헌형, 혼합형, 기타(창의혁신)형</li> <li>- 일자리제공형은 1명 이상 유급근로자 고용, 관참은 일자리 기준 충족</li> </ul> </li> </ul>
③ 영업활동 수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·판매하는 등 영업활동 수행</li> <li>• 사업기반 및 수익구조 등을 검토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 제외 가능</li> </ul>
④ 배분 가능한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(공증필수)</li> </ul>
⑤ 노동관계법령 및 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, 교육이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「근로기준법」, 「최저임금법」, 「직업안정법」 등 노동관계법령, 신청기업의 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법령 위반 시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 불가</li> </ul> </li> <li>• (예비)사회적기업 필수과정(4시간) 및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</li> </ul>

### « 일자리창출 사업개요 »

- 목 적 : 지역사회 내 부족한 사회서비스 공급 및 취약계층 등에 일자리 제공
- 사업대상 : 인증사회적기업, 예비 사회적기업
- 사 업 비 : 7,262,000천원(도 50% / 시군 50%)
- 사업내용 : 최저 임금수준 인건비 지원(지원비율: 최대 지원비율은 90%로 한정)

### « 사회보험료 사업개요 »

- 목 적 : 4대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한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 및 효율적인 기업운영 도모
- 사업대상 : 인증사회적기업(4대 사회보험에 모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기업)
- 사 업 비 : 4,650,000천원(도 50% / 시군 50%)
- 사업내용 :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지원

## □ 사회적기업 담당부서

구분	부서	전화번호	구분	부서	전화번호
경기도	사회적경제육성과	8008-3583, 3587	광명시	사회적경제과	02)2680-6457
수원시	마을자치과	228-2354	하남시	일자리경제과	5182-1453
용인시	민생경제과	324-2228	군포시	자치분권과	390-0940
고양시	소상공인지원과	8075-3723, 3724	오산시	일자리정책과	8036-7582, 7585
성남시	지역경제과	729-3662, 3663	양주시	일자리정책과	8082-6091, 6092
화성시	사회적경제과	5189-3107, 6057	이천시	일자리정책과	644-4197, 4198
부천시	일자리정책과	032)625-2703	구리시	산업지원과	550-2044
남양주시	일자리정책과	590-8906, 8908	안성시	일자리경제과	678-5454
안산시	소상공인지원과	481-2609, 2276	의왕시	기업지원과	345-2132
평택시	미래전략과	8024-3522	포천시	일자리경제과	538-4428
안양시	고용노동과	8045-2945	양평군	일자리경제과	770-2637
시흥시	일자리총괄과	310-6053	여주시	일자리경제과	887-2287
김포시	시민협치담당관	980-2746, 2747, 2748	동두천시	일자리경제과	860-2368
파주시	도시재생과	940-5071, 5073, 5093	과천시	일자리경제과	02)3677-2462
의정부시	일자리정책과	828-2373	가평군	일자리경제과	580-2957
광주시	일자리경제과	760-2671	연천군	지역경제과	839-2286